

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·양수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즉시(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)
------	-----	--

양도인	업체명	전화번호
	대표자명	생년월일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
양수인	업체명	전화번호
	대표자명	생년월일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
양도·양수 내용	
----------	--

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양수인)대표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2. 양수인에 관한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(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·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
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